

제340회 1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3. 6. 19(월)

경상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95
제출일자	2023. 5. 31.
회부일자	2023. 6. 2.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영두)

경상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 제안이유

- 착한가격업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착한가격업소 정의 규정(안 제2조)
- 나.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다.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 규정(안 제6조)

4. 관계법령 :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3. 3. 16. ~ 4. 5(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6. 관련부서 협의

가. 예산 수반사항 : 비용추계서(별첨)

나. 부패영향평가 : 부패 유발요인 없음

다.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라. 성별영향평가 : 평가 제외 대상

7. 검토의견

가.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

-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현재 시·군에서 지정하고 국·도·시군비로 지원중인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도 조례 없이 시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통한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정의)에서는 일정 지정 대상과 기준 등을 충족하는 '착한가격업소' 정의를 규정함

< “착한가격업소”>의 정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시·평가 등을 통해 시장·군수가 지정한 업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안 제5조(지원)에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함
- 안 제6조(이용 활성화)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 및 운영과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
- 안 제7조(운영현황 점검)에서는 운영현황의 주기적 점검과 점검결과 변동사항에 대한 공개를 규정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기 시행중인 착한가격업소 지원의 근거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도내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임
- 행정안전부의 「2023년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2011년 당시 소비자 물가 급등으로 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 안정 유도를 목적으로 내실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서민 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지정 대상에서 가맹사업자(프랜차

이즈업소)는 제외하고 있음

- 경상북도의 경우 5개 시·군(상주, 칠곡, 청송, 봉화, 울릉)을 제외한 전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 조례의 제정도 필요한 실정임
- 이와 관련, 금번 조례안 제2조(정의)의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업소”로 한정하고 있어 위 법을 인용하지 않은 행정안전부 지침과 도내 3개 시·군 조례(경주·김천·의성), 그리고 위 법을 인용한 나머지 시·군 조례 간에 지원 대상이 서로 다른 결과가 발생함
- 이에 따라 도 조례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경주·김천·의성은 시장·군수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 중 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업소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도 조례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기관별 “착한가격업소”의 정의

구분	행정안전부	도 조례안	시·군 조례	
			경주, 김천, 의성	타 시·군
대상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 행위를 하는 업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업소	도 조례안과 유사
비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인용 없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인용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인용 없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인용

※ 「소상공인기본법」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을 제외한 업종은 5명 미만

- 또한 제5조(지원)제1항제4호의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은 ‘1회용 소모품 지원’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폐기물 발생을 최대 억제하기 위한 의무를 담은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특히 「경상북도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도내 에너지 소비량의 12.7% 절감을 목표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추진하고 있는 도 계획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본 조례안의 ‘소모품 보급’ 조문은 향후 지원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지침 마련시 “영업에 필요한 물품”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지원 대상 업소에 대한 시·군 조례와의 통일성 및 환경 관련 조례와의 일관성, 도 환경정책의 수용성 등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

경상북도 착한가격업소 운영 현황

- ◆ 물가안정 모범업소인 착한가격업소에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착한가격 분위기 조성 및 물가안정 동참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 900백만원(국비 107 도비 238 시군비 555)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 국비 보조				착한가격업소지원 * 자체사업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착한가격업소	900	360	107	75	175	540	163	377	

- 지원대상 : 23개 시·군 착한가격업소(600개소)
※ '23년 4월기준 : 505개소(외식업 333, 이미용업 129, 세탁업 23, 목욕업 13, 기타 20)
- 주요내용 :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시군에서 업소별 맞춤형 물품* 지원 (업소당 150만원 지원)
* 쓰레기봉투, 주방용품, 위생·청결용품 등 지원
 -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시 착한가격업소 추천(시군→도→국세청)
-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2023년)

□ 추진실적

- 2020년 : 533백만원(도비 160 시군비 373), 421개소 지원
- 2021년 : 533백만원(도비 160 시군비 373), 421개소 지원
- 2022년 : 533백만원(도비 160 시군비 373), 417개소 지원